

特許手數料 過誤納金 反還요령 制定

特許廳 告示 第88-2號로 告示, 2日부터 施行

特許廳은 지난 2月 2日 特許廳 告示 第88-2號를 통해 特許法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·登錄料와 手數料의 不受理分 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 요령을 示했다.

이번 示의 전문을 소개한 다.

第1條 (目的)

이 요령은 特許法 第78條 規定에 의한 特許料·登錄料와 手數料의 不受理 또는 과오납 된 요금을 신속·정확하게 환 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 (反還金의 대상)

特許法·實用新案法·意匠法 及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·登錄料와 手數料의 징수규정에 의거 납부된 요금(이하『手數料』라 한다)중 不受理 또는 과오납(이하『과오납』이라 한다)된 요금으로 한다.

第3條 (反還金의 承當)

手數料의 과오납금을 환 신청한 年度의 特許管理特別會計 세출예산 에서 承當한다.

第4條 (反還기간)

과오납된 手數料를 납부한 날로부터 5年内로 한다.

第5條 (反還金 申請인)

手數料의 과오납금 환 申請인은 세입금 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者 또는 그 위임을 받는者가 申請하여 야 한다. 다만 환 金에 대한 위임을 받는者가 申請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者의 인감증명서 各 1部를 첨부하여 申請하여야 한다.

第6條 (反還절차)

① 各 주무과에서 과오납된 手數料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납부자 및 재무관에게 通보하여야 한다.

② 과오납된 手數料를 反還받 고자 하는者는 特許料·登錄料와 手數料의 환 申請서에 다 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
▲ 납부한 手數料를 전액 환 申請서 : 서류 첨부용 영수증 及 납부자용 영수증

▲ 납부한 手數料를 일부 환 申請서 : 납부자용 영수증

③ 재무관은 환 申請서 및 과오납(不受理)통지서등에 의거 내용을 검토하여 第2條의 대상 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 하여야 한다. 다

만 手數料를 은행에 납부하고, 同 요금으로 소관 부서에 出願·請求 및 기타 節次를 취하지 아니하고 환 申請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 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등을 확인하여 환 한다.

第7條 (反還金의 계좌이체지급)

手數料 환 申請인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재무관에게 계좌개설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 금을 그 계좌로 이체지급할 수 있다.

第8條 (정리)

재무관은 과오납(不受理)환 金 처리대장에 의거 과오납금의 환 申請 및 환 金 지급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1) (施行日) 이 告示는 告示 한날 (2月2日)로 부터 施行한 다.

2) (경과규정) 이 告示 施行 전에 환 申請된 과오납금은 이 告示에 의하여 申請된 것으로 본다. <※>